

『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·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17개 통·리 증설에 따른 「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」 일부개정
 - 통장 17명 증원 : 625개 통·리장(통장 453, 리장 172) ⇒
642개 통·리장(통장 470, 리장 172)
 - 도량동2, 선주원남동3, 비산동2, 상모사곡동3, 임오동1, 양포동6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 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
 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라 통리장의 수가 일부 조정되어 통리장의 정수를 일치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통리장의 정수를 당초 625명에서 도량동 2명, 선주원남동3명, 비산동 2명, 상모사곡동 3명, 임오동 1명, 양포동 6명 등 총 17명이 증가된 642명으로 조정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본 개정조례안은

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에 맞게 통리장의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